

의안심사보고서 (의안번호 150)

1. 의안명 : 울산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

2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: '98. 12. 11
- 나. 제출자 :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- 다. 위원회 회부 : '98. 12. 14
- 라. 위원회 상정 : '98. 12. 24

3. 제안설명 요지(제안설명자 : 기획감사실장)

조례운용의 효율성과 의회의 조례 심의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기구관련조례를 통합 운영하려는 것으로 보건소 설치 조례를 폐지하고 본 조례에 보건소 설치 근거를 신설하였으며, 또한 동의 설치 근거를 신설 함

4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: 송원수)

- 행정조직 운영과 관련하여 여러종류의 조례를 운영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낭비를 초래하고 있으므로 기구와 관련된 조례를 통합운영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
-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린 통합조례 모델 표준안에 근거하여 전면 개정하는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 됨

5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울산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50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1998. 12.
제출자 : 중구청장

1. 제안이유

- 행정조직 운용과 관련하여 다양한 조례를 제정 운영함으로써 기구·정원 조정시 각종의 조례·규칙을 개정하는 등 행정낭비 및 지방의회 조례심의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어,
- 조례운용의 효율성과 의회의 조례심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기구관련 조례를 통합 운영하려는 것임.

2. 주요골자

- 기구관련 조례 통합 운영 : 보건소설치조례 폐지
 - 보건소설치조례 + 행정기구설치조례 ⇒ 행정기구설치조례
- 구본청, 보건소, 동의 설치근거 및 사무분장 규정
 - 보좌기관 : 기획감사실
 - 총무국 : 총무과, 주민자치과, 지방세과, 민원실
 - 사회산업국 : 지역경제과, 사회복지과, 위생과, 환경보호과, 환경미화과
 - 건설도시국 : 건설교통과, 도시과, 건축과, 지적과
- 국장 및 실과장, 보건소장, 동장의 직급은 규칙으로 정함.

3. 근거법규

- 지방자치법 제102조 내지 제104조
-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0조

4. 개정조례안 : 따로 붙임

울산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

울산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울산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

제1장 총 칙

제1조 (목적)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02조 내지 제104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.)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울산광역시 중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국장 및 실·과장의 직급 등) ① 구 본청의 국장의 직급, 본청·직속기관의 실·과장등 보조·보좌기관의 직급과 실·과장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의 직급과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동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2장 구 본 청

제3조 (국의 설치)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총무국·사회산업국·건설도시국을 둔다.

제4조 (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조·보좌기관의 설치) 부구청장 밑에 기획감사실을 둔다.

제5조 (총무국에 두는 과) ① 총무국에 총무과·주민자치과·지방세과 및 민원실을 둔다.

② 총무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

1. 서무, 인사, 회계, 재산관리, 지역정보화, 통신 등에 관한 사항
2. 자치행정, 민방위, 문화·관광 및 체육, 120기동대 운영등에 관한 사항
3. 지방세 부과 및 세무조사 등에 관한 사항
4.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, 체납처분 등에 관한 사항
5. 민원1회 방문처리제, 병무, 호적 등에 관한 사항

제6조 (사회산업국에 두는 과) ① 사회산업국에 지역경제과·사회복지과·위생과·환경보호과 및 환경미화과를 둔다.

② 사회산업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

1. 지역경제 활성화, 상·공업, 농·수산업에 관한 사항
2. 생활보호대상자, 노인·여성·아동·청소년 등 사회복지에 관한 사항
3. 공중위생, 식품위생 등에 관한 사항
4. 환경보전대책,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등에 관한 사항

제7조 (건설도시국에 두는 과) ① 건설도시국에 건설교통과·도시과·건축과 및 지적과를 둔다.

② 건설도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

1. 도로관리, 재난·재해대책, 각종 교통행정 등에 관한 사항
2. 도시계획의 수립·조정 및 도시 재개발, 산림보호 등에 관한 사항
3. 건축 및 주택행정, 광고물 등에 관한 사항
4. 지적공부 관리, 지가조사 및 부동산관리 등에 관한 사항

제3장 보 건 소

제8조 (설치) ① 법 제104조제1항과 지역보건법 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에 보건소를 설치한다.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소의 명칭·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.

제9조 (소장) ① 보건소에 소장을 둔다.

② 보건소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·감독한다.

제10조 (소관사무)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9조에 규정된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.

제4장 동

제11조 (설치) ① 법 제3조제3항 및 제4조제3항·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을 둔다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동의 사무소의 명칭·위치 및 관할구역은 이를 따로 조례로 정한다.

제12조 (직무) 동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업무, 민원서류발급, 통·반조직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 사무를 관장한다.

제13조 (동장) 동에는 동장을 두며, 동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, 소속직원을 지휘·감독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다른조례의 폐지) 이 조례의 시행에 따라 울산광역시중구 보건소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.

【별 표】

보건소의 명칭·위치 및 관할구역(제8조관련).

명 칭	위 치	관 할 구 역
울산광역시 중구 보건소	울산광역시 중구 남외동 603-2번지	울산광역시 중구일원